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 | |
|---|---|
| 문서번호 : | 18-07-일본군'위안부'TF-01 |
| 수 신 : | 각 언론사 |
| 발 신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단장 이상희) |
| 제 목 : |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
| 전송일자 : | 2018. 7. 30.(월) |
| 전송매수 : | 총 2매 |

# [성 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6년 1월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대외비)'라는 문건을 만든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정부의 대외적 신인도,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해 합의(이하 '2015년 위안부합의'라 한다)를 한 직후였고, 해당 소송의 1심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합의 절차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일본 정부와 군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죄' 없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선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1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배척할 논리를 미리 세우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합하고자 하급심 재판에 개입하였거나 영향을 끼치려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포기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이 되고 73년이 지나도록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

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재판 결과에 반영하려 하였다니,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